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7년 3월 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5(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배포일시 | 2017. 3. 3. (금) | 담당부서 | 지역경제총괄과 |
|---|---|---|---|
| 담당과장 | 천영길 과장 (044-203-4410) | 담 당 자 | 김범수 사무관(044-203-4451) |

#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

## - 3.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17. 3. 2.(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16.10.31)**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 **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 및 체질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지역 6대 부문 지원프로그램 예시('16.10.31 대책 중)**

① **금융·세제** : 융자지원, 신용보증,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산업펀드 등
② **신규 수요 창출** : 공공조달 참여 확대, 신규시장 개척, 수출 기업 지원 등
③ **고용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일자리, 실직자 지원, 재취업 지원 등
④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 사업다각화, 업종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
⑤ **지역혁신역량 구축** : 정부R&D지원, 산학융합지구, 스마트공장보급 등
⑥ **지역상권활성화** : 전통시장 현대화, 관광활성화 지원, 맞춤컨설팅 등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 붙임: 「균특법」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의안번호 2002973, '17.3.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범수 사무관(044-203-44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안 번 호 | 2973 |
|---|---|

제출연월일 : 2016. 10. 27.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1) 현행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또는 개발대상도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안 제17조 신설)



Indus



1)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안 제1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을 “지리적·사회적”으로, “처하게 되어”를 “놓이게 되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Indus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ndus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7. ---------- 지리적·사회적---------- -- 놓이게 되어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 |
|---|---|
| <신 설> |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br>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 |



Indus



| | |
|---|---|
| | 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br>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7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

| | |
|---|---|
|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br>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